

#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 사업 운영지침

2022. 3

##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해외 팝업부스 운영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기관과 운영기업의 역할 및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관리·운영·평가·비용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
2. “운영기업”이라 함은 대상국에 기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 또는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으로 대상국에 화장품 팝업부스(이하 “팝업부스”)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컨소시엄”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으로 구성하는 협력체를 말한다.
4. “대상국”이라 함은 운영기업이 팝업부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추진방향)** 본 사업은 대상국에 팝업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유망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하고자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운영기업은 현지에서 팝업부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소요 예산을 지원받는다. ② 지원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국가별 50백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운영기업은 정부지원금의 50% 수준의 현금 또는 현물을 매칭 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 절차)**



**제6조(사업의 신청)** ① 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기간을 명시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업은 사업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른 신청서 원본을 기한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고 신청서 사본을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업은 5개 내외의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운영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신청 기업에 대해 현장을 실사할 수 있다.

**제7조(평가 및 선정)** ① 관리기관은 신청된 지원서에 대하여 신청기업의 자격, 신청서에 첨부한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학계, 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 산업계 등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7인 내외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을 평가한다.

1.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 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3. 목표시장 선정 적합성
4. 기대효과
5. 기타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 이내에서 최종점수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⑤ 대상국별로 운영기업은 최대 2개 도시까지 중복신청이 가능 하나, 하나의 도시만 선정 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⑦ 관리기관은 지원 대상을 선정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한다.

**제8조(협약의 체결)** ① 관리기관은 선정된 운영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관리기관은 지원금의 70% 이내의 선금을 지급하며, 잔금은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이후 지급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 공고 또는 통보 후 14일 이내에 운영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변경)** 선정된 운영기업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및 참여제한)** ① 관리기관은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운영기업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기업의 부도 및 폐업
2. 운영기업의 사업 착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운영기업의 사업 수행이 현저히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운영기업이 제1항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운영기업에 대하여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위약금)** 관리기관은 운영기업의 과실에 의해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협약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 ① 운영기업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관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업은 사업 수행에 관하여 착수보고, 수시보고, 결과보고, 정산보고 문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 시 최초 사업신청서에 제시한 목표 대비 실적 및 비용 소요 내역을 포함한 보고서를 팝업부스 운영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 정산은 운영기업에서 지명하는 기관(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한다.

③ 관리기관은 사업 수행 실적 점검을 중간점검,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관리기관은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운영기업의 추진실적, 소요비용, 사용실태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업은 사업 종료 후에도 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성과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을 통한 국내·외 계약 등 협력 성과 홍보 시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잔액의 지급)** ① 관리기관은 당해 사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 추진실적, 예산 소요내역 등을 확인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운영기업에 지원금 잔액(30%)을 지급한다.

②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일 이후의 지원금 집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업의 승계)** 운영기업이 사업 수행 중 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기업을 양수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관리기관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사업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관리기관의 권한, 운영기업의 자료제출)** ① 관리기관은 중간점검 및 과제 수행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업에 사업의 운영·관리와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운영기업이 사업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기업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운영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기업의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수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④ 사업 수행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종료 후에도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기업은 관련 정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요구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